

## ㉔ 공단 홈페이지 안내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연금내역 조회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민원서류 발급 신청
- 연금일부정지 조정 신청
- 연금소득 과세 조회
- 기타 연금정보 제공 등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http://www.geps.or.kr)) → 내연금보기(고객지원시스템)  
회원가입 → 로그인 후 즉시 이용가능

### 서울지부

서울강남 Tel. 02-560-2553  
서울강북 Tel. 02-560-2578  
경기남부 Tel. 02-560-2587  
경기북부, 인천 Tel. 02-560-2255

Fax. 02-560-2600  
우)135-706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상록회관내 6층

### 부산지부

Tel. 051-630-6819, 6845 Fax. 051-645-2054  
우) 601-705 부산 동구 조방로 4 (법일동)  
천우빌딩 12층(구 부산상록회관)

### 대전지부

Tel. 042-600-0534 Fax. 042-600-0501  
우) 302-830 대전 서구 둔산중로 8(탄방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6층

### 광주지부

Tel. 062-350-5062 Fax. 062-350-5079  
우) 502-740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47  
(농성동) 광주상록회관 내

### 대구지부

Tel. 053-603-2434 Fax. 053-603-2405  
우) 700-755 대구 중구 대봉로 260(대봉동)  
센트로펠리스(오피스텔) 108동 3층

### 강원지부

Tel. 033-257-4733 Fax. 033-257-4736  
우)200-721 강원 춘천시 경춘로 2370  
(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내 3층

### 전북지부

Tel. 063-281-7702 Fax. 063-281-7720  
우)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전라북도청사 내 16층

### 제주지부

Tel. 064-720-1612 Fax. 064-751-5000  
우) 690-729 제주시 중양로 165 (이도일동) 제주상록회관내 3층

# 공무원연금에도 세금이 있다고요?

## 2014 연금소득 과세 안내

4단계만  
따라하면  
저절로 OK!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관련 모든 상담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공무원연금공단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 연금과세 이해하기

공무원 연금에 부과되는 소득세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시죠?  
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연금소득 과세제도란?

- 2002년 1월 1일 시행된 제도로 재직중 근로소득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 3)

	2001.12.31 이전	2002.1.1 이후
기여금 납부 시	소득공제 비대상	소득공제 대상
연금 수령 시	비과세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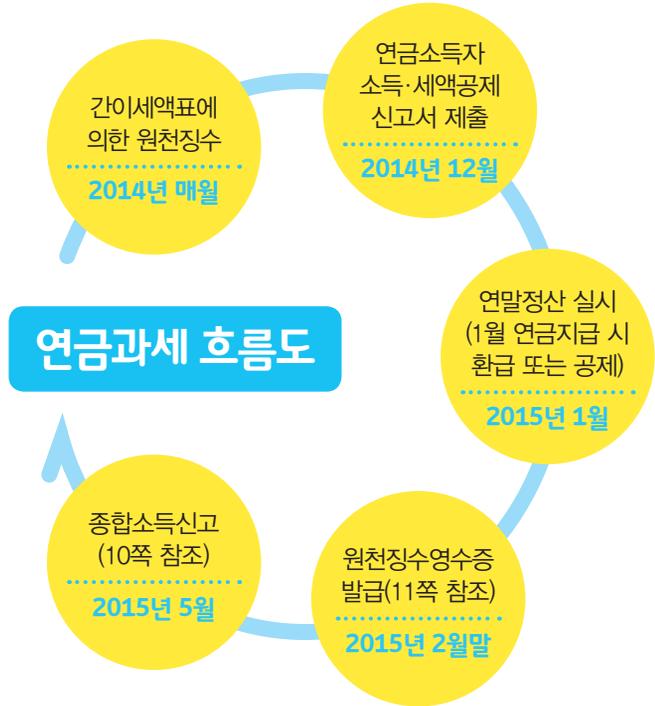
-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임

## 과세대상연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text{과세대상연금액} = \text{총연금수령액} \times \frac{\text{'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과세기간)}}{\text{총 기여금 납부월수}}$$

※ 과세대상연금액은 연금소득 중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입니다.

과세대상연금액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주민세를 매달 연금에서 공제하고, 연말 정산을 통해 1년동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공제 또는 환급해 드립니다.



# 연금소득 과세절차 4단계

## 1 단계 부양가족 공제신청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TIP!** 이종 공제는 NO!  
**TIP!**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으로 신고할 것인지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항목은 9쪽 참조

## 2 단계 매달 연금에서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소득세는 과세대상연금액과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를 기준으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제 189조제2항 별표3)'에 따라 부과되며, 주민세율은 소득세의 10%가 됩니다.

$$\text{과세대상연금월액} = \text{총연금월액} \times \frac{\text{'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text{총 기여금 납부월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단위: 원, 명)

과세대상 연금월액	부양가족 수(본인포함)			
	1	2	3	4
865,000 ~ 870,000	13,640	6,140	0	0
870,000 ~ 875,000	13,880	6,380	0	0
875,000 ~ 880,000	14,120	6,620	0	0

※ 간이세액표는 세법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3 단계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

매년 12월에는 공단에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당해연도 12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방법  
인터넷 신고:  
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 내 연금 보기  
→ 인증서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 소득·세액공제신고

서면 신고:  
준비서류 - 연금소득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 제출처 -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지부

※ 부양가족의 변동(소득요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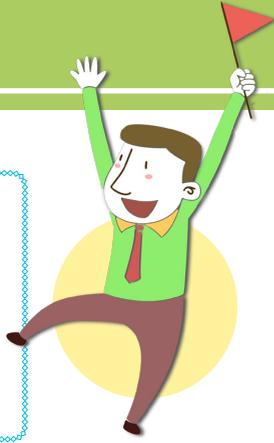
## 4 단계 세금환급 또는 추가 공제

연말 정산 결과 다음해 1월 연금을 받을 때 환급 또는 추가 공제됩니다.



# 한공직님의 연말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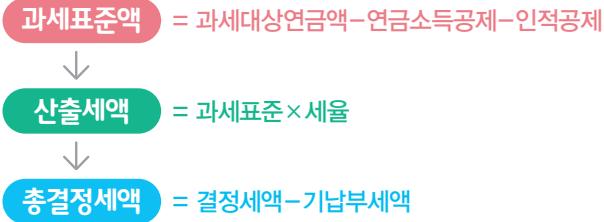
## 따라가기



그럼, 한공직님의 예를 들어 설명해볼까요?

재직기간 33년(396개월)  
 부양가족 배우자  
 과세기간 12년(144개월)  
 → 2002. 01.~2013.12.  
 연금월액 월 240만원

### 한공직님의 연금소득 연말정산 산정절차



(단위: 원)

과세대상연금액 ①	10,472,727	
연금소득공제 ②	-5,594,545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연금소득금액 ③	4,878,182	
기본공제		
본인	-1,500,000	
배우자	-1,500,000	
과세표준액 ④	1,878,182	
산출세액 ⑤	112,690	과세표준액 × 6%
표준세액공제	-70,000	'14년 신설
결정소득세 ⑥	42,690	연말정산결과 납부했어야 할 세액
결정주민세	4,260	소득세의 10%
기납부소득세 ⑦	-76,560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
기납부주민세	-7,560	
총결정세액 ⑧	-37,170	1월연금 지급시 환급(공제)

① 과세대상연금액: 총연금수령액 × 과세기간 ÷ 재직년수  
 $(2,400,000원 \times 12개월) \div (144개월 \div 396개월) = 10,472,727원$

② 연금소득공제: 과세대상연금액에 해당하는 공제액 계산  
 $4,900,000원 + \{(10,472,727원 - 7,000,000원) \times 0.2\} = 5,594,545원$

연금소득공제표

과세대상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과세대상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③ 연금소득금액: 과세대상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10,472,727원 - 5,594,545원 = 4,878,182원$

④ 과세표준액: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4,878,182원 - (1,500,000원 + 1,500,000원) = 1,878,182원$

⑤ 산출세액: 과세표준액 × 6%  
 $1,878,182원 \times 0.06 = 112,690원$

연금소득 세율표(2014년 현재 기준)

과세표준액	적용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6%
1,200만원 초과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⑥ 결정세액: 결정소득세 + 결정주민세

결정소득세: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12쪽 참조)  
 $112,690원 - 70,000원 = 42,690원$

결정주민세: 결정소득세 × 10%  
 $42,690원 \times 0.1 = 4,260원$ (일원단위 버림)

**\*\* 42,690원 + 4,260원 = 46,950원**

⑦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기납부소득세 + 기납부주민세  
 $(6,380원 + 630원) = (월7,010원 \times 12개월) = 연 84,120원$

기납부세액: 과세대상연금월액과 부양가족 수에 해당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로 계산

과세대상연금월액 = 총연금월액 ×  $\frac{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총 기여금 납부월수}$

$2,400,000원 \times 144개월 \div 396개월 = 872,727원$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단위: 명, 원)

과세대상연금월액	부양가족 수(본인포함)			
	1	2	3	4
865,000 ~ 870,000	13,640	6,140	0	0
870,000 ~ 875,000	13,880	6,380	0	0
875,000 ~ 880,000	14,120	6,620	0	0

⑧ 총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46,950원 - 84,120원 = -37,170원$

※ 총결정세액이 마이너스(-)이므로 환급대상

# 소득·세액 공제항목을 알아볼까요?

연금소득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총 세가지. 그중에서 조정이 가능한 인적공제는 꼼꼼하게 따져서 챙기세요.

※ 연금소득은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143조의 4)

## 1 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의2) ※ 공제한도: 900만원

과세대상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과세대상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2 인적공제 (2014년 현재) (단위: 만원)

공제구분	요건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공제	소득자 본인	150
	배우자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150
	부양가족 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50
		- 직계존속(만60세 이상) - 직계비속(만20세 이하) - 형제자매(만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추가공제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로 만70세 이상	100
	장애인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200
	부녀자 (14년 일부개정)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소득금액이 연3,000만원 미만이어야함	100
	한 부모 공제 (13.1.1.신설)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50
	자녀양육비 관련 세액공제 (14.1.1.신설)	당해연도 출생·입양자, 만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 1~2자녀 15만원, 3자녀부터는 20만원 세액공제	15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동시 적용될 경우 한부모공제만 가능

## 3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7만원 공제 받음(12쪽 참조)

# 연금수급자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나요?

2002년 이후 퇴직한 연금수급자가 연금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란?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위의 소득이 2개 이상이 되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연금소득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정신고를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신고의 예외

- 공무원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연금소득(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일용직

※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중에서 특정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입니다.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나요?

A 아닙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이 연간 약 77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과세대상연금액이 대략 771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Q 연금수급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A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못한 사항은 종합소득신고기간(매년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Q 연금수급자도 자녀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부양가족) 대상이 되나요?

A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100만원)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이면 대상이 됩니다.

\*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근로, 사업, 임대, 이자·배당, 연금)과 퇴직·양도소득 등 소득종류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연간합계액

단, 공무원연금소득만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연금액이 516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율과 과세대상연금액 516만원-연금소득공제 416.4만원(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의 40%)

### ※ 공제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공단홈페이지 → 내 연금보기 →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자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 여부(N/Y/표시)에서 확인하세요.

## Q 연금과세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공단 홈페이지 → 내 연금보기 → 로그인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연말정산 현황(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순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